

## 법무부

2006년 2월 20일

### 대중에게 더 좋은 봉사를 하기 위한 인권 개혁

#### 현대화된 온타리오의 인권제도

McGuinty 정부는 2006년 봄 회기에 입법안을 상정 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의 인권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타리오의 40년간 사용되어온 인권제도를 쇄신 할 것입니다.

발의된 새 인권 모델에 의하면 보다 강화된 온타리오 인권재판소에 직접 제소할 수 있음으로 인권에 관한 불평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운용중인 온타리오의 인권제도

온타리오 인권위원회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와 온타리오 인권재판소 (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 로 구성된 현 인권제도는 캐나다 최초의 인권을 법제화한 1962년 이후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인권법은 온타리오의 모든 주민이 직장, 숙박, 상품, 서비스 및 시설에서의 차별과 인권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제정 되었습니다.

#### 온타리오 인권위원회

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며 법무부 장관 을 통하여 주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온타리오 인권법을 시행합니다. 그 주요 임무는 불평을 접수하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불평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불평을 온타리오 인권 재판소에 기소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그 정책과 연구 그리고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지침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받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주요 문서는 인종차별 관행, 나이 차별, 강제 은퇴 그리고 식당 출입 편의 제공 감사 등입니다.

McGuinty 정부는 2005년 11월부로 Barbara Hall 을 온타리오 인권위원회의 최고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 온타리오 인권재판소

인권재판소는 인권법에 기준한 차별과 인권약탈에 관한 불평을 청문하고 결정하는 유사 사법 기관입니다. 인권 재판소는 위원회가 회부하는 불평만을 청문할 수 있습니다. 인권 재판소는 불평에 관한 심리와 결정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McGuinty 정부는 2005 년 4 월 온타리오 인권재판소의 최고 책임자로 Michael Gottheil 을 임명하였습니다.

## 발의 된 새 온타리오 인권 위원회

발의 된 개혁안에 의하면 위원회는 주로 대중교육, 광고 그리고 공공 변호, 연구, 감사 등과 같은 예방정책에 중점을 두어 온타리오 내의 조직적 차별을 공론화 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 방지 서기국이 위원회 내에 설치 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인권재판소에 불평을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불평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 새로 제청 된 온타리오 인권 재판소

새로운 불평 절차를 수립하여 불평을 인권재판소에 직접 제소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분쟁을 공정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인권재판소에 자체의 업무와 절차를 결정할 법적 권한을 부여 하게 됩니다. 새 모델에 따르면 재판에 의거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권리를 부여 할 법률적업무 그리고 조언 업무를 할 것입니다.

- 30 -

연락처  
Greg Crone  
법무 장관실  
(416) 326-1785

Brendan Crawley  
법무부  
(416) 326-2210

[www.attorneygeneral.jus.gov.on.ca](http://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일반 전화 문의 416-326-2220 또는 1-800-518-7901

시력장애자는 상기 전화번호로 본 문서의 내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TTY: 416-326-4012

본 문서는 14 개 국어로 번역 됩니다. 번역 문서는 [www.attorneygeneral.jus.gov.on.ca](http://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